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19나5445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19나544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37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김혜영,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슬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은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변론 종결 2021. 3. 5

판결선 고 2021. 4. 23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375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167,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3의 나.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3의 나.항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중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형광등 기구에 부착된 안정기의 내부 및 연결 전선에 단락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배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화재는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 안정기 설비의 노후로 인한

단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형광등 안정기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임차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피고가 형광등 안정기 설비를 교체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왔던 점,③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형광등 안정기와 연결전선은 석고보드로 마감된 반자에 설치된 형광등에서 천장 쪽으로 매립되어 외부에노출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위 설비의 하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안정기 등 설비에서 화재 발생이 의심되는 징후는 없었던점, ④ 임대인인 C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에 대하여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 왔고, 형광등 안정기의 경우에도 점검 시 절연측정을 통하여단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화재의원인이 된 형광등 안정기는 전기시설의 일부로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임대인의 지배·관리영역 하에 속해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이와 달리 임차인인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권혁준 판사 박미선